

2004. 12. 1(금) 10:00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제 3 차)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 천 시 의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28호)

2004. 12.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 7. 8, 성재윤 의원 외 4인 발의
- 회부일자 : 2004. 7. 8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상정일자 : 2004. 11. 22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의원협의 발의 안건으로 생략

■ 제안이유

- 사천시의 사업소 신설 및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고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을 발의함

■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총 무 위 원 회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기획담당관, 장보담당관,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산업건설 위 원 회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 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총무위원회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 지관, 환경시설사업소 , 문화예술 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총무위원회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 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 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제중봉]

■ 시정의 현안 사업인 신청사 건립의 조속 추진과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등 신도시건설인 행정타운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인 **행정타운사업소**를 신설하고

■ 2004년 7월 1일부로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하수업무의 조직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상하수도과의 하수담당과**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위치한 **환경시설사업소**를 통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과 함께 기능 및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 2004년 6월 29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가결시킨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맞추어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코자 하는 취지이므로 신청사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타운사업소**는 종전 회계과 사무분야인 신청사건립추진팀 즉 지금의 신청사건립팀과 신설된 사무분야인 행정타운조성팀을 합하여 **행정타운사업소로 신설**된 것이며 행정타운사업소는 지역개발국 업무에 속하는 택지개발 지원업무 등도 있으나 신청사건립에 따른 설계, 계약, 부지조성, 준공 등 총무국 회계과와 많은 연관이 있는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 하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소는 종전 **상하수도과 사무분야인 하수담당과 사업소로서의 환경시설사업소를 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된 것으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 하수처리시설 설치등 하수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의안의 요건인 발의 의원수, 신규조문대비 등 형식, 법령의 범위내에서 발의하도록 한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

질의	답변
질의자 : 최갑현 의원 상하수도과 업무중 나머지 업무는 ?	답변자 : 제충봉 전문위원 하수담당시설만 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영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